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0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20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이종성 · 김석기
이인선 · 최영희 · 하영제
조경태 · 이채익 · 강기운
권명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· 직계친족 · 형제자매 ·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· 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소송기록 열람 · 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주체인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어 범죄피해자들의 알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러한 법원의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또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 이로 인하여 일부 범죄피해자들은 공판기록 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

유출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겪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·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, 그 판단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며,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94조의 4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4조의4제3항 중 “경우 범죄의 성질, 심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”를 “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불복할 수 없다”를 “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판기록의 열람·등사에 관한 적용례)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

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기록의 열람·등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) ①·② (생략)	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·등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<u>경우 범죄의 성질, 심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.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에는</u> <u>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.</u>
④ (생략) <u><신설></u>	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<u>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
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<u>불복할 수 없다.</u>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	⑦ ----- ----- <u>즉시항고를</u> <u>할 수 있다.</u>